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담당	검토자	결제권자

추가약정서
(취업(창업)청년 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년 월 일

본인 (인)

주소

본인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함)과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기한연장

① 기한연장시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정한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요건 상실이유를 안내하고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금리(소득은 신규당시 기준, 일차보증금은 연장시 기준)를 적용합니다.

1. 퇴직한 경우

2. 이직한 경우(단, 이직한 기업이 제외업종을 제외한 소기업중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3.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창업청년가구에만 해당) (단, 차주로부터 제외업종을 제외한 소기업중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에 최업한 것을 입증받는 경우 제외)

② 2년단위 총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나, 2회 연장시부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금리(소득은 신규당시 기준, 임차보증금은 연장시 기준)를 적용하며 연장하기로 합니다.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본인	(인)

5-16-0361(1-1) (2023.04 제정)
(보존년한 : 처리일로부터 영구)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약관-063 호(2023.04.13)

하나은행